

## 파주시 어린이·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 및 관리에 관한 조례

[시행 2022.04.29]  
(일부개정) 2022.04.29 조례 제1821호

관리책임부서명 : 대중교통과  
관리책임전화번호 : 031-940-5791

**제1조(목적)** 이 조례는 「도로교통법」 제12조, 12조의2에 따라 지정된 파주시 어린이·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·노인 및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통안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정의)**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“어린이 보호구역”이란 「도로교통법」 제12조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파주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 어린이(13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. 이하 같다)를 보호 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.

2. “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”이란 「도로교통법」 제12조의2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시 노인 및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. (개정 2015.7.28)

가. 「노인복지법」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(개정 2015.7.28, 2018.2.9)

나. 「자연공원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연공원 또는 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

다. 「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6조에 따른 생활체육시설

라. 「장애인복지법」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중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(개정 2015.7.28)

3. “초등학교 등”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 소재 시설을 말한다. (개정 2015.7.28)

가. 「유아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유치원

나.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38조 및 제55조에 따른 초등학교·특수학교

다. 「영유아보육법」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가운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 (개정 2015.7.28, 2018.2.9)

라. 「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른 학원 가운데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학원 (개정 2015.7.28)

4. “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시설”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 소재 시설을 말한다. (개정 2015.7.28)

가. 「노인복지법」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(개정 2015.7.28, 2018.2.9)

나. 「자연공원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연공원 또는 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

다. 「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6조에 따른 생활체육시설

라. 「장애인복지법」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중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(개정 2015.7.28)

**제3조(책무)** ① 파주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어린이·노인 및 장애인 교통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물의 설치·개선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. (개정 2020.9.25)

② 모든 시민은 어린이·노인 및 장애인 교통안전을 위한 사업과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해야 한다.

**제4조(기본계획수립 등)** ① 시장은 매 5년마다 보호구역 개선 파주시교통안전기본계획(이하 “기본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하고,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·시행해야 한다.

② 기본계획에는 보호구역에 관한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현황

2. 개선목표 및 개선방향

3. 신호기·안전표지에 관한 사항

4. 도로부속물의 설치·정비 및 유지

5. 노상주차장의 폐지 또는 이전계획

## 6. 개선 및 재정 지원

7. 그 밖에 시장이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계획수립과 사업시행에 필요한 경우 관할 경찰서, 교육지원청, 도로교통공단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. <개정 2022.4.29>

**제5조(실태조사 및 사후관리)** ① 시장은 매년 보호구역에 대한 교통안전 및 도로 부속물의 실태와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기본계획과 그 시행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.

② 시장은 「어린이·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」제11조에 따른 보호구역에 대한 사후관리 계획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.

**제6조(교통안전교육등)** ① 시장은 해당시설의 어린이·노인 및 장애인을 대상으로 보행안전 등에 관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.

② 제1항의 교통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.

1. 교육장을 통한 교육
2. 프로그램 제작 및 보급을 통한 자체교육
3. 그 밖에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 등

**제7조(교통지도)** 시장은 초등학교 등의 장이나 시설의 장에게 어린이·노인 및 장애인이 많이 지나다니는 시간대에 관할 보호구역의 주요 횡단보도 등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교사, 학부모 또는 교통봉사단체 등으로 하여금 안전하게 도로를 횡단할 수 있게 교통지도판을 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으며,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.

**제8조(지원 등)** <조 제목 개정 2022.4.29>

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교통봉사단체 등이 어린이·장애인 및 노인의 안전을 위하여 교통지도를 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 <개정 2022.4.29>

② 시장은 관할 경찰서, 교육지원청 등 관계기관에서 보호구역의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, 개선, 보수 등 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요청할 때에는 검토하여 필요한 소요예산을 편성하는 등 재정상의 조치를 할 수 있다. <신설 2022.4.29>

**제9조(협력체계의 구축)** ① 시장은 교통안전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관할 경찰서, 교육지원청, 도로관리청, 관련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하며,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협의체의 구성, 운영에 대해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.

[본조 신설 2022.4.29]

**제10조(시행규칙)**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 <제9조에서 조이동 2022.4.29>

### 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전에 시장이 어린이·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 대하여 지원하였거나 지원 중인 사항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.

**부칙(2015.7.28 조례 제1223호) (파주시 조례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 조례)**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**부칙(2018.2.9 조례 제1408호)(파주시 조례 중 중앙행정기관 명칭 등 일괄정비조례)**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**부칙 (2020.9.25 조례 제1631호) (어려운 한자어 정비 등을 위한 파주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·제빙에 관한 조례 등 14개 조례 일부 개정을 위한 조례)**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**부칙(2022. 4. 29. 조례 제1821호)**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